[제2026-25호]

2026년도 하반기 무역안보관리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무역안보관리원은 국제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내유일의 비확산 수출관리 전문기관(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원은 무역 강국인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국제 무역규범 하에 안전한 무역을 통하여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19.
무역안보관리원장

블라인드 채용 안내

무역안보관리원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직원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 블라인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 성　　명 : 지원자 또는 지원자와 관련된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예시) 무역안보관리원에 지원한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② 성　　별 : 지원자의 성별을 기재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남자로서~ / 여자로서~ 등
(예시) 군 복무 당시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 의무복무대상임이 파악되어 성별 유추가 가능한 경우로 블라인드 위반

③ 연　　령 : 지원자의 연령 또는 연령대를 기재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저는 30대 초반으로~

④ 출신지역 : 지원자의 출신지역 또는 연고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⑤ 출신학교 :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기재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학교생활 중 투자 동아리 '○○○'이라는 곳에서~
☞ 특정 동아리 등을 통해 출신학교 유추가 가능한 경우로 블라인드 위반

⑥ 가족관계 : 지원자의 가족관계 또는 가족의 직업, 직장명, 지위 등이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지원 분야와 관련된 회사의 연구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⑦ 기　　타 : ①~⑥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개인 인적사항 유추가 가능한 경우

□ 블라인드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모두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시스템 Q&A를 통해 채용 전반에 관한 문의는 가능하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은 문의가 불가합니다.**

□ 학교명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전자우편(대학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별 주요 직무수행내용,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부문 및 인원

구분	부문	인원	근무지	채용방법	담당 업무	근무기간
체험형 청년인턴	경영지원	2	서울	공개경쟁채용	직무기술서 참조	임용일로부터 '27.7.3. 까지
	연구지원	3				
합계		5				

※ 담당 업무 세부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2. 근무조건

항 목	내 용
채용 형태	체험형 청년인턴
보수	월 235만원(세전)
근무지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 소재)
복리후생	4대 보험, 주 5일 근무, 연차 휴가, 유연근무제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7.7.3.까지

3. 응시자격 및 제한

우리 원은 비확산·수출통제 부문 각종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업무이며,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이 요구되는바, 어학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학점수는 증빙서류 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24.11.22.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6.11.3.)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해 인정 (단, TOEIC, TOEFL-IBT, OPIc, TOEIC-S 등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시,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응시 자격
체험형 청년인턴	• 학력, 성별, 경력 등 무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만 34세 미만인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청년 인정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이면 2세, 2년 이상 3세 • TOEIC, NEW TEPS, TOEFL-IBT, TOEIC Speaking, OPIc 점수 보유자로 **TOEIC 환산점수 700점 이상인 자**

※ 어학 기준

- **TOEIC 환산점수 700점 이상 기준**

TOEIC	Toeic-Speaking	OPIc	New TEPS	TOEFL-IBT
700	IM2	IM1	264	79

* 외국어(영어) 성적은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조회 가능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미리 인정기간 만료전에 공인성적을 등록한 성적만 인정

4. 응시 원서 접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6. 10. 19. (월) 14:00 ~ 11. 3. (화) 18:00
접수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kosti.recruiter.co.kr)
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접수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된 결과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집중되어 서버 장애 등으로 입사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부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채용 전형 일정

구분	세부내용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0. 19. (월) 14:00 ~ 11. 3. (화) 18:00
서류전형 결과발표	11. 17. (화)
증빙서류 제출기간(온라인)	11. 17. (수) ~ 11. 22. (일)
면접전형	11. 24. (화)
합격 예정자 발표	11. 27. (금)
이의 신청 접수	11. 27. (금) ~ . 12. 11. (금) 12:00
최종합격자 발표	12. 18. (금)
입사	'27. 1. 4. (월)

※ 상기 전형일정은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자께서는 모든 전형 이전에 공지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세부전형기준

전형 단계	대상	전형 기준	선발인원
서류전형	모든 지원자	• 응시 자격 및 제한 사항 충족 여부 • 입사지원서 평가 - 공인영어시험성적 점수 **40점** 어학점수는 증빙서류 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24.11.22.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6.11.3.)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해 인정 (단, TOEIC, TOEFL-IBT, OPIc, TOEIC-S 등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시,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자기소개서 **60점** - 가점 항목('가점항목 및 부여기준' 참조)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 기관명 오기재, 작성항목 누락, 문항 별 답변 중복, 의미없는 문자 나열,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	고득점자 순 5배수 내외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 경험면접 방식, 조직이해능력·대인관계능력·직업윤리·의사소통능력·자기개발능력 5개 항목 평가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예정자 결정	고득점자 순 1배수 내외

전형 단계	대상	전형 기준	선발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 대상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제5조·제6조 등에 따르는 청년 • 면접 이전 전형(들)의 점수 총합이 높은 순으로 우선 채용	

7. 가점항목 및 부여기준

가. 가점부여 대상자 및 적용 점수

구 분		적용 대상	가점
기본	취업지원 대상자[주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주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선택	기초생활 수급자[주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서류전형 만점의 3%
	한부모 가정[주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경력단절 여성[주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정[주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주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주8]	「아동복지법」에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비수도권 지역인재[주9]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한국사 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1%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의 경우,「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단 보훈채용의 경우 제외

나. **<u>중복가점에 따른 처리 : 선택가점 적용대상자의 가점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 가점만 인정(기본가점과 중복 인정)</u>**

주1)대상자 구분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주2)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3)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주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주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인 자 중 출산,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❶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6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단 및 경제활동 없음을 증빙), ❷주민등록등본(출산, 육아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6)「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❶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❷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❶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❷가족관계증명서, ❸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8)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로서 ❶보호종료확인서 또는 ❷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재지 기준 최종졸업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 출신자로서 ❶졸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별첨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여부 기준' 참조)

8. 결격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우리 원「인사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⑤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9. 증빙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종류
기본 제출	▣ **응시 원서 접수 시 제출** ① 응시원서(온라인 접수 양식에 기재)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성별, 출신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 원서에 작성된 정보를 기준으로만 평가되며 이후 서류제출 및 검증과정은 허위정보 기재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 **면접 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① 공인영어성적시험 증명서(최고 성적 1개만 인정) ② 가점 부여 대상자 관련 증명 서류('가점항목 및 부여기준' 참조) ※ **제출 서류에 성별, 학교명, 학번, 졸업학교 이메일, 워터마크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정보나 그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마스킹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확인, 서류전형 검증(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가점사항 등 평가에 관련된 사항)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에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점 항목 별 증빙서류는 공고문 내 '가점항목 및 부여기준'에 기술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 및 가점 대상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급적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 **합격예정자 공고 후 합격예정자만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에 한함) ③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⑦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⑧ 가족 채용 여부 확인서

10. 유의 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기간에 진행되는 타 채용 전형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자의 성별, 출신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채용 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지문에 정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recruit@kosti.or.kr으로 제출바랍니다.
- ❍ 최종합격자라도 우리 원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과거 또는 금번 채용과정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라고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 등 입사 이후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및 기간만 연봉산정 시 검토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외국어(영어)성적은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조회 가능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미리 인정기간 만료 전에 공인성적을 등록한 성적만 인정됩니다.

※ 조회가 불가한 성적은 불인정(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 면접 대상자에 대한 서류 입증 과정에서 지원서 허위기재 등을 포함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전형 도중이라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일환으로 전형 별 선발배수 이내에 한하여 차순위자에게 다음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및 임산부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전형 개시 이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콜센터(1522-7257)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및 채용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 -